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교육기관이 교육 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제3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